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9633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1. 3. 10. 한[redacted]구 B빌라 101호, 201호, 202호, 701호, 801호에 대한 2001년도분 취득세 부과처분,

2001. 6. 10. 한 위 B빌라 101호, 2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에 대한 2001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7

2001. 10. 10. 한 위 B빌라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에 대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2002. 7. 10. 한 위 B빌라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에 대한 2002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

2002. 10. 10. 한 위 B빌라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에 대한 2002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5. [redacted]공업 주식회사(이하 '[redacted]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redacted]공업 소유의 [redacted]구 B건물 제101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제601호, 제602호, 제701호, 제702호, 제8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101호', '102호' 등으로 표시한다)를 중도금 지급일자 2000. 6. 23., 잔금 지급일자 2000. 11. 24.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01호, 201호, 202호, 701호, 801호에 대하여는 2001. 10월경부터 2002. 9월경까지 사이에(101호 2002. 4. 22., 201호 2001. 10. 18., 202호 2001. 12. 17., 701호 2002. 9. 9., 801호 2001. 11.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흥화공업에서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702호에 대하여는 2002. 8.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602호에 대하여는 2002. 8. 14.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해 이후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0. 11. 24.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1. 3.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를 위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1년경 위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보아 2001. 6. 10. 200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 2001. 10. 10. 2001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하고, 2002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101호, 201호, 202호, 801호를 제외한 나머지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를 원고가 2002년경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보아 2002. 7. 10. 2002년분 재산세 부과처분, 2002. 10. 10. 2002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각 처분들의 내역은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다. 위 각 처분들 중 원고가 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은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2호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및 202호에 관한 2001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들을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0. 5. 25. [redacted]공업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한빛은행의 부정대출을 은폐하기 위한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이고, 일부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7

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도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다.

⑵ 따라서 원고는 101호, 201호, 202호, 701호, 801호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2001년분 및 2002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⑶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2호가 2002. 8.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를 취득하였다가 당일 곧바로 매도하였다. 따라서 2001년분 및 2002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2001년분 재산세는 5. 1., 나머지는 6. 1.)에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2001년분 및 2002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redacted]공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811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redacted]공업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redacted]공업에게 원고가 부과받은 세금 중 일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4.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23. 채권최고액 156억 원, 채무자 주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7

회사 토우부, 채권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redacted]공업(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redacte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③ 원고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101호, 201호에 대한 취득세 일부와 101호, 401호, 601호, 801호에 대한 2001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601호, 801호에 대한 2001년분 재산세는 완납하였다).

④ 원고는 2011. 10. 4. 및 2015. 9. 7.에는 체납세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당시 원고가 과세관청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 또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없다(원고는 각 납부계획서가 원고가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2호에 관한 취득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 9. 7.자 납부계획서에 기재된 체납액이 408,822,380원에 이르러 원고가 인정하는 위 취득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2016. 11월경 세금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예고문을 받자 비로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⑥ 달리, 원고의 주장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7

판사 김춘화

판사 이광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7

별지

과세처분내역

연번	세 목 (과세연도)	과세물건	부과처분일
1	취득세 (2001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빌라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 (12건)	2001.3.10.
2	재산세 (2001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빌라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 (12건)	2001.6.10.
3	종합토지세 (2001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빌라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 (12개호수를 1건으로 과세)	2001.10.10.
4	재산세 (2002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빌라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건)	2002.7.10.
5	종합토지세 (2002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빌라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개호수를 1건으로 과세)	2002.10.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7

<2001년 3월 취득세 과세현황> (금액단위: 원)

해당 호수	취득 원인	취득일자	과세표준	취득세	농특세	세액합계	납세 의무자
101호	매매	2000.11.24	660,000,000	15,840,000	1,452,000	17,292,000	
201호	매매	2000.11.24	690,000,000	16,560,000	1,518,000	18,078,000	
202호	매매	2000.11.24	690,000,000	16,560,000	1,518,000	18,078,000	
301호	매매	2000.11.24	720,000,000	17,280,000	1,584,000	18,864,000	
302호	매매	2000.11.24	720,000,000	17,280,000	1,584,000	18,864,000	
401호	매매	2000.11.24	750,000,000	18,000,000	1,650,000	19,650,000	
402호	매매	2000.11.24	750,000,000	18,000,000	1,650,000	19,650,000	
601호	매매	2000.11.24	780,000,000	18,720,000	1,716,000	20,436,000	
602호	매매	2000.11.24	780,000,000	18,720,000	1,716,000	20,436,000	
701호	매매	2000.11.24	840,000,000	20,160,000	1,848,000	22,008,000	
702호	매매	2000.11.24	840,000,000	20,160,000	1,848,000	22,008,000	
801호	매매	2000.11.24	780,000,000	18,720,000	1,716,000	20,436,000	
합계			9,000,000,000	216,000,000	19,800,000	235,800,000	

<2001년 6월 재산세 과세현황> (과세기준일 : 2001.6.1.) (금액단위: 원)

해당호수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세액합계
101호	55,333,890	1,337,040	110,660	65,530	267,400	1,780,630
201호	59,932,080	1,581,580	119,860	72,890	316,310	2,090,640
202호	60,134,715	1,593,820	120,260	73,210	318,760	2,106,050
301호	59,932,080	1,581,580	119,860	72,890	316,310	2,090,640
302호	60,134,715	1,593,820	120,260	73,210	318,760	2,106,050
401호	59,932,080	1,581,580	119,860	72,890	316,310	2,090,640
402호	60,134,715	1,593,820	120,260	73,210	318,760	2,106,050
601호	59,932,080	1,581,580	119,860	72,890	316,310	2,090,640
602호	60,134,715	1,593,820	120,260	73,210	318,760	2,106,050
701호	59,932,080	1,581,580	119,860	72,890	316,310	2,090,640
702호	60,134,715	1,593,820	120,260	73,210	318,760	2,106,050
801호	52,322,580	1,141,140	104,640	60,710	228,220	1,534,710
합계	707,990,445	18,355,180	1,415,900	856,740	3,670,970	24,298,7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7

<2001년 10월 종합토지세 과세현황> (과세기준일 : 2001.5.1.) (금액단위: 원)

해당호수	과세표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세액합계
101호 외11	489,375,447	3,673,750	978,750	-	734,750	5,387,250

<2002년 7월 재산세 과세현황> (과세기준일 : 2002.6.1.) (금액단위: 원)

해당호수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세액합계
301호	58,880,640	1,519,730	117,760	71,200	303,940	2,012,630
302호	59,079,720	1,531,750	118,150	71,520	306,350	2,027,770
401호	58,880,640	1,519,730	117,760	71,200	303,940	2,012,630
402호	59,079,720	1,531,750	118,150	71,520	306,350	2,027,770
601호	58,880,640	1,519,730	117,760	71,200	303,940	2,012,630
602호	59,079,720	1,531,750	118,150	71,520	306,350	2,027,770
701호	58,880,640	1,519,730	117,760	71,200	303,940	2,012,630
702호	59,079,720	1,531,750	118,150	71,520	306,350	2,027,770
합계	471,841,440	12,205,920	943,640	570,680	2,441,160	16,161,600

<2002년 10월 종합토지세 과세현황> (과세기준일 : 2002.6.1.) (금액단위: 원)

해당호수	과세표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세액합계
301호 외7	323,149,416	2,011,490	646,290	-	402,290	3,060,070